



의 안 번 호	제13호
회 의 연 월 일	2023. 2. 20. (제509회 회의)

심의 의결 사항

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(대통령령)

제 출 부 서	경 찰 청 (생활안전국)
제출연월일	2023. 2. 20.

범죄예방정책과장, 범죄예방운영계장

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침

1. 제정이유

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조직으로, 자율방범대의 설치·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 고취를 통해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되었음

이에 따라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, 과태료 부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자율방범대 지원(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)

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시·군·구연합대에 복장·장비, 식비, 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, 시·도지사 및 경찰청장은 연합회 및 자율방범중앙회에 시설 운영비, 홍보 경비 등 연합회·중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

나. 과태료 부과(안 제5조)

과태료 부과기준을 ‘일반기준’과 ‘개별기준’으로 구분하여 ‘일반기준’에는 가중·감경 내용을 규정하고, ‘개별기준’에는 위반 횟수(3회)에 따른 과태료 금액(100~300만원)을 규정함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기관 협의중

라. 기 타 : 없 음

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경비 등 지원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4조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자율방범대 및 시·군·구자율방범연합대(이하 “연합대”라 한다)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경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자율방범활동 및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복장·장비·차량의 취득비 및 유지·보수비
2. 자율방범활동 및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방범초소·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(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) 및 운영비
3. 자율방범활동에 지출된 식비
4.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·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
5. 강의료, 교보재 구입비, 교육 장소 사용료 등 시·도경찰청장·경찰서

장·지구대장·파출소장(이하 “시·도경찰청장등”이라 한다)이 실시하는 교육·훈련에 소요되는 경비

6. 그 밖에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경비 등 지원 방법,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3조(연합회의 경비 등 지원) ① 시·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·도자율방범연합회(이하 “연합회”라 한다)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경찰청장은 경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차량 취득비 및 유지·보수비
2.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방범초소·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(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) 및 운영비
3.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·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
4. 강의료, 교보재 구입비, 교육 장소 사용료 등 시·도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·훈련에 소요되는 경비
5. 그 밖에 시·도지사 또는 시·도경찰청장이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경비 등 지원 방법,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4조(중앙회의 경비 등 지원) ① 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(이하 “중앙회”라 한다)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중앙회의 활동을 위한 차량 취득비 및 유지·보수비
2. 중앙회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(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) 및 운영비
3.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·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
4. 그 밖에 경찰청장이 중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회의 경비 등 지원 방법,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.

제5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

제6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경찰청장, 시·도경찰청장, 경찰서장, 지구대장·파출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, 같은 영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, 제6호, 제7호, 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.

1. 법 제4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

2. 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
3. 법 제6조에 따른 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무
4. 법 제8조에 따른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무
5. 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자율방범대원, 중앙회·연합회·연합대의
지도·감독에 관한 사무
6. 법 제10조에 따른 자율방범대원의 교육·훈련에 관한 사무
7. 법 제11조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무
8. 법 제12조에 따른 중앙회·연합회·연합대의 설립에 관한 사무
9. 법 제14조에 따른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
10. 법 제1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

부 칙

이 영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5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중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(단위: 만원)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자율방범대 또는 중앙회등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19조제1항	100	200	300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범죄예방정책과	
연 락 처	(02) 3150 - 2866